#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506

발의연월일: 2021. 11. 24.

발 의 자:조명희·김석기·김성원

박대수 · 박덕흠 · 성일종

조경태 · 추경호 · 하영제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주는 취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하여 자녀 세대의 독립이 늦어지고, 부모와 기혼 자녀 부부가 동거하는 가구인 '신(新)캥거루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바탕으로 독립하려는 사회 초년생 및 신혼부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가 해당 특례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인적 조건을 본인과 그 배우자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체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 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 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 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를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 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 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를 "3개월 이 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항 제3호 중 "매각·증여"를 "매각·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증 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아 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 대한 취득세 감면) ① ----------본인 및 배우자(「가 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 서 같다)가-----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 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 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 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 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 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 세법 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 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 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 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 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 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 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 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 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 1. ~ 4. (생 략)
-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

<u>2024년 1</u>
<u> 2월 31일</u>
<u>.</u>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1. ~ 4.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①

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1. (생략)
-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u>3개월</u>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 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신설>
-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 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 당 주택을 <u>매각·증여</u>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 로 사용하는 경우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